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2008. 6. 23.
행정자치위원회

1. 수정이유

가.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정부의 대국대과제(大國大課制)원칙에 따라 과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통상국에 2개팀을 유지하고 있으나, 조직체계의 일원화하기 위하여 팀제를 전면폐지 하고

나. 부서명칭 중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주민에게 익숙해진 부서명칭은 현재 명칭을 유지하기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직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팀제 전면 폐지(안 제2조 및 제3조)

- 담당관·과장·팀장 ⇒ 담당관·과장
- 과·담당관·팀의 설치 ⇒ 과·담당관의 설치

나.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서명칭은 현재 명칭으로 유지(안 제25조 및 제7절)

- 북부농업연구소 ⇒ 마늘연구소
- 충청북도내수면사업소 ⇒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 제목과 본문 중 “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·팀장”을 “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”으로 한다.

안 제3조의 제목 “과·담당관·팀의 설치”를 “과·담당관의 설치”로 한다.

안 제25조제2항 중 “북부농업연구소”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마늘연구소”로 한다.

안 제7절의 제목 “충청북도내수면사업소”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”로 한다.

안 제53조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3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내수면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.

안 제54조 및 제56조 중 “내수면사업소”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내수면연구소”로 한다.

안 제55조 본문 중 “사업소장”을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연구소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명칭란 중 “북부농업연구소”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마늘연구소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 2조(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·팀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)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 본청의 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·팀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 2조(-----·과장 등 -----)----- ----- ----- -----·과장의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 3조(과·담당관·팀의 설치) ①~② (생략)</p>	<p>제 3조(과·담당관의 설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 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북부농업연구소, 채소연구소, 잠사시험장을 둔다. ③ (생략)</p>	<p>제 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, 마늘연구소, ----- -----.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사업소</p>	
<p>제 53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사업소(이하 “내수면사업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내수면사업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.</p>	<p>제 53조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(이하 “내수면연구소”라 한다)----- ② 내수면연구소----- -----.</p>
<p>제 54조(소장) 내수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 54조(소장) 내수면연구소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개 정 안	수 정 안
제 55조(소관사무) <u>사업소장은</u>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~5. (생략)	제 55조(소관사무) <u>연구소장</u> ----- ----- 1.~5. 개정안과 같음
제 56조(지소) <u>내수면사업소의</u>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,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 56조(지소) <u>내수면연구소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【 개 정 안 】

[별표 1]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포도연구소	옥천군 관내
북부농업연구소	단양군 관내
채소연구소	음성군 관내
잠사시험장	청주시 관내

【 수 정 안 】

[별표 1]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포도연구소	옥천군 관내
마늘연구소	단양군 관내
채소연구소	음성군 관내
잠사시험장	청주시 관내